

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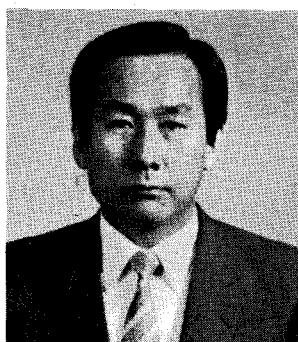
論

目 次

- I. 머리말
- II. 우리나라 現行制度 및 問題點
- III. 美國等 先進國의 立法例
- IV. 書籍類에 대한 商標審查基準
- V. 맺는말

〈이번號에 全載〉

書籍類의 題號가 商標로 登錄 될수 있는가



李佑權
〈特許廳 審查官〉

I. 머리말

書籍類의 題號(Title)가 상표법상의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되어왔다. 이것은 서적류의 제호는 그 서적과 一體化 되어 있고 또 직접 그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表題로서 사용되는 것이 通例이기 때문에 著作權法(Copyright Law)上의 보호 대상이지 상표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見解와, 실거래사회에서 구독자는 그 서적의 題號만 보아도 自己가 구매하고자 하는冊을 선별해서 구입할 수 있을 程度이므로, 서적의 題號는 그 자체에 상품의 識別力(Distinctiveness) 이 在內해 있다고 보아 商標登録의 對象이 된다고 보는 見解 등 視角의 差異點에서 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같이 書籍의 題號는 상품의 출처표시인 商標(Trademark)로서 사용하는 경우와,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題號로서 사용되는 두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題號를 商標登録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그 상표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여러나라에서는 서적의 제호를 著作權法에서 직접 명문의 규정을 두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著作權法에서는 이와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判例 및 學說은 題號 自體만을 獨立하여 著作物로 볼수 없어서 著作權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解釋하고 있어서(통설), 다시말하면 題號에 대한 우리 著作權法上의 보호 미흡으로 저작자는 서적의 題號를 상표로 出願하여 보호 받고자 하는 傾向이

많다.

여기에서는 書籍類의 題號에 대한 우리나라의 現行制度 및 미국 등 선진국의立法例를 살펴보고 '90.3.7자 일부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을 中心으로 書籍類의 商標審查基準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現行制度 및 問題點

1. 상표법 및 동 심사기준

우리나라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商品의 원산지·품질·효능·용도표시 등 소위 記述的(Descriptive)인 상표는 자타상품의 識別力(Distinctiveness)이 없다고 보아 拒絕하고 있으나, 정기간행물의 제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特性上 식별력이 있는것으로 보아 비록 그 제호가 記述的인 상표에 해당되더라도 이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허여하고 있으며, 다만, 單行本의 제호에 대하여는 그 제호가 직접 서적의 內容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限하여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거절하고 그외의 경우는 일반상품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登錄을 허여하고 있다. (상표심사기준 제2호다목 11~11-1)

그러나 著作權의 存續期間은 그 저작물이 創作(發行)된 날로부터 저작자의 死後 50년간 으로 限定되어 있어서 題號를 상표로 등록받음으로서 更新出願方法 등을 이용해 영구히 獨占使用케 되면 著作權 본래의 취지에 反하게 된다는 흄이 지적되고 있다.

2. 著作權法

서적의 제호를 상품의 출처표시인 商標로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題號로서 사용할 것인지는 著作權의 임의이므로 이를 制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 著作權法上의 제호에 대한 保護 未洽으로 因하여 著作者는 서적류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받아 보호 받고자 하는 傾向이 많은데 이는 어떻게 보면 著作權法上의 문제를 商標法으로 끌어들여 問題를 惹起시키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수도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題號는 商標로서의 機能과 題號로서의 機能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캐릭터에 의한 商品化權

소설, 만화, 연극, 영화, 동작화(Animation) 등에 등장하는 인물(여기에는 의인화된 동물·로보트·우주인·단순한 기기등 포함)의 이름이나 명칭 또는 이들의 독특한 個性이나 형상·모양 등 Image를 캐릭터(Charater)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기있는 캐릭터를 利用하여 상품을 만들수 있는 權利 즉,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은 著作權法 등에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대한 보호가 미흡하며, 다만, 캐릭터가 만화나 삽화등 的形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술 또는 영상저작물로서 미약하나마 그 보호를 받을수 있으나 그러나 순수한 文字로만 된 캐릭터의 이름은 예컨대, 「미키마우스」「배트맨」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특히 美國등 선진국들로부터 이 분야에 대한 商品化權 侵害禁止 요청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캐릭터의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는 경우도 많다.

III. 美國등 先進國의 立法例

1. 美國

1회의 發行으로 끝나는 單行本의 題號는 출원전 사용에 의한 識別力(Secondary meaning)을 취득한 경우에 限하여 판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이론에 따라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단행본의 題號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출원인은 반드시 출원전 사용에 의한 識別力이 있음을 立證해야 한다. 그러나 라디오·TV시리즈제목·시리즈영화제목등 연재물(Series)과 新聞이나 雜誌등 편집저작물(Edited work)의 제호는 이러한 立證 없이도 그것자체에 식별력이 在內해 있는것으로 보아 상표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題號를 직접 著作權法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즉 정신적 저작물의 題號는 獨創的 性質을 나타내는 때부터 그 著作權 自體와同一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유형의 저작물에 混同을 惹起할 수 있는 題號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5조)

3.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프랑스의 경우처럼 제호를 저작권법으로 직접 보호해 주고 있다. 즉, 저작물을 특징지우는 독자성 있는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자의 同意없이 다른 저작물에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0조)

4. 일본

우리나라의 법제는 일본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IV. 書籍類에 대한 商標審查基準

1. '90.3.7자 일부개정된 심사기준 내용

〈現 行〉

○通常 書籍의 題號로 쓰인다고 인정되는 것
(예) ○○서 · ○○학 · ○○선 · ○○집 ·
○○저 등은 원칙적으로 본호(상표법 8①
3)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신문 ·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Periodical)의 제호는 원칙적
으로 識別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된 審查基準〉

○單行本 書籍의 題號(Title)에 대하여는
그 제호가 직접 서적의 内容을 나타내는 것이
라고 인정될 때에는 品質을 表示하는 것으로
본다.

－품질표시만으로 된 것－

(예) 산업재산권법 · 경제학 · 행정학 · 민법
총칙 · 영한사전 · 대백과사전 · 국문법 · 영
어 · 수학 · 현대문학전집 등.

－품질표시만으로 되지 아니한 것－

(예) 빙점 · 토지 · 서울야곡 등 소설류의
제목, 삼화영한사전 · 동아영어단어집 · 흥길

동 · 손자병법 등.

○신문 · 통신 · 잡지 · 연보 · 연감 등 동일한 제호로 연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원칙적으로 본호(상표법 8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계재하는 카탈로그 및 팜프렛 등은 본호의 적용에 있어 정기간행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書籍의 種類 및 特性

서적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즉, 동일한 제호로 연1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 · 통신 · 잡지 · 연보 · 연감 등 정기간행물(Periodical)과, 1회의 발행으로 끝나는 소설류 · 전문서적 · 사전류 등 단행본(Independent Volume)이 있다.

그런데, 서적류의 제호는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상품의 출처표시인 商標로서 사용되는 경우와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題號로서 사용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이중적 특성 때문에 서적류의 제호는 당연히 著作權으로 보호되어야 하겠으나 상표법상의 상표로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있어서 저작자는 서적의 제호를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제호는 비단 著作權法上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3. 書籍類에 대한 具體的 審查基準

가. 定期刊行物의 題號

신문 · 통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제호를 상표로 출원한 경우에 있어서 비록 그 제호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정상품의 원산지 · 품질 · 효능 · 용도표시 등 소위 記述的(Descriptive)인 상표에 해당되더라도 정기간행물이 지니는 特性上 예외적으로 자타상품의 識別力(Distinctiveness)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표등록을 허여 하고 있다.(상표심사기준 제2호다목11-1)

왜냐하면 정기간행물은 그 성질상 편집에서

발행까지 신문사나 출판사에 의해 行하여 지며 그 내용도 이들 신문사나 출판사의 편집기능에 의해서 대부분 메꾸어 지기 때문이며, 또 매일 매월 발행되는 매호마다 그 수록된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나 독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識別이 可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특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정기간행물이 지니는 특성상 비록 그 제호가 記述的인 상표에 해당되더라도 이에 불구하고 모두 상표등록을 허여하며, 다만 상표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不登録 사유 등 그외 상표등록 적격 여부는 일반상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이상에서는 상표의 標章(Marks) 자체에 대해서 알아 보았으나 지금부터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살펴 보고자 한다. 즉, 정기간행물은 그 특성상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예외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취지에 맞추어 그 지정상품도 반드시 정기간행물에 限定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기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87.11.28. 법률제3979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즉, 동일한 제호로 연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신문·통신·잡지·연감·연보 등 정기간행물 이어야 하며, 다만, 순수한 학습자료나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카탈로그 및 팜프렛 등은 비롯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기간행물로 보지 아니한다.(상표심사기준제2호 다목(11-1)) 예컨대, “여성패션”이라는 월간잡지의 Title을 상표로 출원하였을 경우 그 지정상품은 반드시 신문·통신·잡지·연감·연보 등 정기간행물로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記述的인 상표로 보지 아니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單行本의 題號

1회의 발행으로 끝나는 소설류·전문서적·사전류 등 단행본(Independent Volume)의 제호는 그 제호가 직접 그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名稱인 경우 예컨대, 산업재산권법·경제학·행정학·철학개론·영어·수학·국문법 등의 제호는 그 상품(서적)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하며, 그외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의 경우 예컨대, 국어사전에 “민중”이라는 식별력 있는 부분이 결합하여 “민중국어사전”이라고 구성된 제호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하면 서적류의 제호가 직접 그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상품의 경우처럼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즉, 원재료·품질효능·용도표시 등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 적합한 조목이 없어 어떤것을 적용해야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호가 그 서적의 内容表示的인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하자는 취지이다.

이와같이 단행본 서적의 제호가 그 서적의 내용표시적인 경우에는 거절되나 식별력이 있는 제호는 비록 서적류의 제호라도 일반상품의 경우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 기타 인쇄물의 제호

카탈로그·팜프렛·학습지·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것)·영사된 필름·슬라이드 필름 등 상품류구분 제52류의 나머지 상품에 대하여는 모두 단행본 서적의 경우와 동일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V. 맷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書籍類의 題號는 직접 그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表題(Title)로서 사용되는 경우와 상품의 출처표시인 상표로서 사용되는 두 경우가 있어서 著作權法上의

보호도 필요 하지만 동시에 상표법상의 보호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저작(저작물)의 제호에 대한 우리 著作權法上의 보호가 未洽하다고 생각되며,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에 의한 보호 즉,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同一性을 유지할權利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제호가 어느정도 보호된다 고 보아지나 우리나라 판례 및 학설은 제호 자체만을 저작물로 볼수 없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저작자로서는 이를 상표로 출원하여 보호 받으려는 경향 이 많으며 그리하여 최근에 와서는 저작류

제호에 대한 상표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타부처 소관사항 이기는 하지만 듣는바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등록업무에 있어서도 제호등록을 둘러싼 異義提起가 계속 增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학생수의 증가와 독서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書籍類 市場도 종전에 비하면 크게 확대된 것이 사실이며, 이에따른 저작류의 제호를 商標로 출원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특허청의 금번 이분야에 대한 상표심사기준의 整備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지며 미비사항은 앞으로 施行해 나가면서 계속 補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特許·實用新案出願公開 및 公告索引集」발간

1. 우리協會는 特許情報 檢索의 効率性 提高를 위하여 既 發刊 索引集에 이어서 '88 年度分 特許·實用新案 出願公開 및 公告索引集을 각각 IPC別 및 出願人別로 區分하여 다음과 같이 發刊하였습니다.

■ 다음 ■

1. 製作內容

區 分	公告索引集	公開索引集
體 制	菊倍版(11절)	菊倍版(11절)
面 數	260面(合本)	1,280面(卷當 640面)
索引의種類	IPC別, 出願人別(合本)	IPC別, 出願人別(分冊)
1面當收錄件數	約60件	約60件
總收錄件數	7,262件	38,023件

2. 發行日 : 9月 1日

3. 價格

區 分	公告索引集('88年度)	公開索引集('88年度)
會 員	20,000원	75,000원
非 會 員	25,000원	85,000원

4. 問議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查資料部(555-6892)

(138-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중앙종묘빌딩7층)

〈前號에서 계속〉

2. 우리나라 합성수지 工業의

胎動과 展開

本項은 年代順으로 作成되어 있는데, 이 연대順은 참고문헌의 기재 內容中에 연대가 表現되어 있으면 그 年代를, 연대에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면 참고문헌의 發行 연도를 각當該 연대로 하여 작성된 것임.

우리의 경우 1932年 朝鮮질소비료에서 저온 전류법에 依한 인조석유의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전하여 지고 있으며, 1962년에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914년부터 맹아되기 시작한 석유화학의 산업화를 위한 大韓石油公社가 설립된바 있다.

가. 여명기

1930年代부터 합성수지 제품 공업은 始作되었다고 전하여 지고 있으며, Phenol 수지 · Urea 수지 등 热경화성합성수지를 使用하여 단순히 家電기구인 전기Socket · Seat 등을 제조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1940년대에도 Urea수지의 성형 가공 제품을 生産하였다고 알려져만 있다.

나. 태동기

그러나 1950년대 들어 합성수지 제품 공업은 그 有用性과 經濟性의 인정으로 급격한 發展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一部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도입하여 成形 加工을 하기도 하고 열경화성 합성수지인 phenol이 수지의 獨自的인 加工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 지는 발전도 보게 되었는바, 卽 6·25동란을 前後하여 여러 가지 합성수지 제품이 紹介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서울 환도 직전부터는 합성수지 성형가공 공업이 發展되기 시작하였는바 이 당시의 합성수지 工業은 大部分 가공 工業이며 합성수지 분야에서는 약간의 열경화성 합성수지와 Metacylate 수지의 製造와 Emulsion 重合이 행하여 지고 있었으며, 합성수지 가공분야는 압축성형, 이송성형, 사출성형, 압출성형, Inflation 성형, 취입성형, 진공성형, Slush성형, Calender성형, 유리섬유보강 poly ester



丁 洛 承
〈特許廳 審查官〉

目 次

1. 概 說
 2. 우리나라 합성樹脂工業의 胎動과 展開
 3. 합성樹脂 성형가공분야의 特許(實用新案) 出願動向
 4. 합成樹脂工業 관련 法制度의 측면
 5. 합成樹脂工業의 現實과 未來
- ※ 統 計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성형(FRP 성형), Foam plastics 성형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特異한 점은 使用者(User)가 합성수지를 제조하거나 성형가공하는, 다시 말하면 Alkyd수지의 생산을 도료 제조공장에서, 전기器具 제조공장에서 尿素수지를, 화장품 공장에서 용기 및 뚜껑등과 같이自家 제조 소비 성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수지별로 본 現況은 樂喜화학, 三洋전기를 비롯한 5~6個社에서 생산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Phenol 수지로서는 主로 전기용품 以外에도 일반성형분, 적층판, 도료용수지를 제조하고 있었으며, 특히 도료용수지는 塗料工場에서自家생산 소비를 하고 나머지를 市販하고 있었다 한다. 金星社의 Transfer Molding機 1대 以外에 적은 수동식 Press 1~2대를 利用한 家內工業型 압축 성형은 헤아릴 수도 없을 程度로 많았다 한다.

Amino수지는 主로 전기용품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또한 家內工業型 압축성형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國內에서 生產되는 尿素와 Formalin을 利用하여 5~6個社가 제조하고 있는 Urea수지의 경우 主된 성형가공 제품인 電氣 部分品도 전기기계를 생산하는 樂喜화학(金星社와 姉妹회사로 금성사에 供給), 東信전기, 三洋전기등이 자가 생산 및 市販하였으며, 이외에도 數개사에서 생산하였다 하는데 合板공장이 수출산업으로 전향됨으로써 대부분 2類合板의 접착에 쓰이는 接着劑는 大成목재(仁川), 盛昌목재, 東明목재, 光明목재(以上釜山), 韓國합판, 青丘목재(이상 群山)등 合板공장에서 자가 소비 製造를 하였고 또한 직물加工用으로 使用되었다 한다.

Melamine수지로는 五星화학(釜山)이 Press 1대로 化粧板을 生产하였으며, Alkyd 수지는 塗料用으로, 不飽和 poly ester수지는 愛敬유지, 極東유지, 新世紀화학에서 生产하였으며, 유리섬유보강의 建築用波板, 원심주형방법에 依한 와이샤쓰 단추, 도료용으로, Metacrylate 수지는 國富산업(부산), 唯信화학(서울)등이 원심주형 成形機로 成形한 2mm두께의 Pearl

板으로 단추, 부못치, 간판등을 제조하였으나 國立工業研究所의 技術指導에 依한 三隆화학이 성형한 2~30mm두께의 透明, 有色, 乳白色板의 生产으로는 主로 Door, 창조명용품등 건축재료로 使用되었다 한다.

Urethane Foam은 東信화학이, PVC수지는 硬質과 軟質 sheet, Cellophane代用 포장용필름, Tile, Pipe, 전선피복용등으로, PE수지는 Blow成形 방법으로 포장용 및 농업용 필름을 射出 또는 Blow 성형방법으로는 완구를 비롯한 일용품 혹은 약간의 小經pipe를, PS 및 Cellulose acetate수지로서는 主로 射出成形에 依한 칫솔대, 비누곽, 머리빗등 일상용품이나 Radio cabinet(PS), Poly styrene foam 등을, Acetal 수지는 Concrete철도 침목의 Bolt cover로, ABS수지로서는 女子구두의 heel에, Poly carbonate수지로는 상수도 계량기의 Gear를 각 제조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Calender시설을 도입하였다 한다.

1950년대 기술현황中에서 1959년도의 技術現況을 검토하여 보건데 全제조업과 化學工業의 生產額에 대한 前年度 對比 42.9% 및 28.7%나 급증한 각각 1.0% 및 14.8%를 차지한 합성수지 工業(표1)은 押出성형기 30대, 射出성형기 65대등 각종 성형기를 利用하여

(단위 m / r)

		59
PE 제품	농업용 필름	500
	포장용 필름	410
	Pipe	80
	Sheet	90
	기타	220
	소 계	1,300
PVC제품	경질 Sheet	200
	연질 Sheet	400
	Leather	245
	Pipe	120
	Tile	130
	기 타	40
	소 계	1,135
	PS	250

기 타	Cellulose Acetate	400
	열경화성수지성형품	500
	기 타	950
	소 계	2,100
	계	4,535

에서와 같이 $4,535^M / T$ (표8)의 각종 제품을 生産하였으나 同 합성수지의 수급면에서는

PE	1,350
PVC	1,150
기타	1,599
계	4,099

에서와 같이 각종 합성수지 $4,099^M / T$ 가 수입(표12)되었으며, Urea등 國內 생산이 되고 있는 일부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제외한(Formaline 은 생산되나 그 원료인 Methanol 은 수입) 일부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원료 수지는 全量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또한 성형 가공 제품의 경우도 1950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급속한 성장은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태동기를 벗어나지 못한 원료 수지인 합성수지의 제조와 더불어 가공업의 발달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으며 또한 기업도 가내공업 형태 내지 이와 類似한 형태를 벗어 나지 못하였다 한다.

다. 개화기

1960年代에 들어서도 外國 합성수지제품의 계속적인 紹介와 더불어 加工技術의 導入을 계기로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生產用 기초 소재를 製品으로 한 電子, 機械工業等各種산업에 미치는 前方效果나 精油산업에 미치는 後方效果가 큰 산업인 石油化學을 근거로 하는 합성수지공업은 徐徐히 成長하기始作하였는데 성형가공 工業에서 사용하는 原料樹脂(合成수지)의 계속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60年代 以前까지는 거의 存在치 아니하였으나 1960年代 초반까지는 比較的 간단한 製造 설비와 技術로써 1963年의 경우

(단위 M / T)	
Urea 수지	성형재료 1,000

Phenol 수지	접착제(합판용) 1,000
	성형재료 300
	도료용 100
Alkyd 수지	(고형분으로 환산) 600
불포화 Poly Ester 수지도료용	30
Metacryl 수지	50
Melamine 수지	화장판 10
Urea foam	20
Polymer Emulsion	30
계	3,140

에서와 같이 小規模로 Phenol樹脂等이 $3,140^M / T$ 생산(표12)되게 되었고, 또한 1960年代중 반까지는 Phenol, Urea, Alkyd등 主로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中心으로 한 합성수지가 生產되어 왔다고 한다.

그러나 同 성형가공製品에 대한 수요의 점차적인 擴大와 더불어 합성수지의 수요도 계속적인 확산이 있었는바 1966年(10월 준공되고 11月가동)에야 비로소 大韓플라스틱(주)가 日本 차관으로 국내 最初로 忠北 芙江에 Carbide Acetylene 方法에 의한 年產 6,600 M / T 규모의 PVC工場을 始發로 하여 1967年 公營화학공업(주), 1968年 한국화성공업(주)와 동양화학공업(주), 1969年 友豐화학공업(주)가 각각 PVC製造 설비를 건설(→이들 5個 회사는 1960年代末에는 연간 44천 M / T 이라는 生산 능력을 가지는 설비로의 急速한 확장에 따라 일시적인 과잉 현상으로 1972年 12月 韓國플라스틱공업(주)로 합병 발족 → 1988, 5月 韓洋화학(주)에 흡수) 이외에도 味元(주)의 1968年 및 1969年에 각 PS, HIPS 공장 건설등 近代의인 설비를 갖춘 諸種類의 열가소성합성수지의 生產시설이 順次的으로 건설되게 되었다 한다.

1961年的 기술현황을 大略 살펴 보면 全제조업 對比 1.1% 및 化學공업 對比 13.6%에 불과한 生산액을 가지는 합성수지 공업(표3)은

수지명	품 명	가공능력 (M / T)	사업체수
Urea 수지	성형재료 1,000		

PVC	경질 sheet	800	5
	Pipe	500	2
	Leather	500	4
	Tile	400	2
	계	2,200	13
PE	Film	1,400	8
	Sheet	400	5
	성형품	800	20
	계	2,600	33
PS	Sheet	200	4
	성형품	1,500	32
	계	1,700	36
Polyester	波板	500	3
	Pearl 판	300	3
	계	800	6
열경화성 수지성형품		500	15
기타 수지 가공품		1,700	35
계		9,500	138

와 같이 $9,500^M / T$ 의 가공能力(표7)을 가진 138個의 加工業體(표5)가

수지명	성형품	'61	'62
PE	농업용Film	1,000	1,000
	포장용Film	530	550
	Pipe	130	140
	Sheet	140	140
	기타	280	270
	계	2,080	2,200
PVC	경질Sheet	240	240
	연질Sheet	540	550
	Leather	280	320
	Pipe	140	170
	Tile	180	270
	계	1,380	1,550
기 타	PS	325	450
	Cellulose	410	450
	Acetate		
	열경화성 수지성형품	500	1,000
	기타	1,380	1,465
	계	2,615	3,365
계		6,075	7,115

와 같은 $6,075^M / T$ 의 각종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표8)한 바는 있으나 同年에 이들 가공제

품을 생산하기 위한 합성수지의 수급에 있어서는

	'59	'60	'61	'62
PE	1,350	1,850	2,180	2,300
PVC	1,150	1,390	1,450	1,600
기타	1,599	1,987	2,050	2,300
계	4,099	5,217	5,680	6,250

에서와 같이 외국으로 부터 각종 합성수지 $5,680^M / T$ 를 수입(표12) 한바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근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열가소성합성수지인 PVC수지를 生産한 1966年の 경우 PE제품등 각종 성형가공 제품들을 $16,700^M / T$ 이나 生產(표8) 하였으며 합성수지의 自給率은 9.7%(표12)에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합성수지 製品의 소비량에 있어서는 PVC製品은 全소비량의 약38%를, PE제품은 약35%로서 이들은 全體 소비량의 약 73%를 차지하며 또한 PVC제품은 약 0.23kg /人, PE제품은 약 0.19kg /人에 해당하는 1人當 합성수지 소비량은 10年前 日本의 1人當 PVC 제품의 $\frac{1}{2}$, PE제품은 거의 같은 量의 소비량에 不過하였다 하는데 이의 主要인은 합성수지 導入時 15%의 관세, 30%의 物品稅 및 其他 15%의 諸稅가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으로 因한 합성수지가 高價 때문이라고 한다.

성형가공 공업의 경우도 全國에 산재한 소규모의 공장들이 각종 제품들을 生產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합성수지의 고가와 수요의 減少로 운영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다.

石油化學工業을 중심으로 관련 공업들이 대규모 콤파니트를 이루어 原料 生產으로부터 성형가공의 단계까지 到達치 못한 1967년의 경우 경제개발 計劃 기간중 대한프라스틱, 공영화학, 한국화섬등에서 PVC를 生產함으로써 합성수지의 脆弱性은 免解 되었으며 합성수지 가공능력에 있어서도 射出成形 16%, 押出成形 45%, Calender成形 20% 및 열경화성합성수지를 利用한 大部分이 가내수공업적인 수동식 압축프레스에 의한 壓縮成形이 19%를 점하는 등 $54,000^M / T$ 의 성형가공 능력(표7)이라는 비교적 發展이 있었으나 각종 성형가공 설비에

의해 생산된 製品들은 소비재 為主였으며 향후 새로운 용도인 산업재, 건축재로서의 必要性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政府의 강력한 석유화학공업에만 약3억 \$의 자금이 投資된 2차례의 경제개발 시책과 지속적인 대외指向型의 수출정책, 나프타 분해센터에서 생산된 Ethylene 등 物質들이 석유화학 계열공장으로 운송되어 合成 및 重合과정을 거쳐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업의 育成, 기계공업 育成 등 제반 政策的인 지원에 힘입어 비록 世界 各國에서는 30餘種의 열경화성 및 열가소 성합성수지의 제품이 개발 되었으나 우리의 경우 PVC, PE, PS, PP, MF, Alkyd, Phenol, Urea, Poly ester 등 8~9種의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생산케 되었고 PVC수지를 除外한 대부분의 수입에 의존하였다.

1969년의 경우 위와같은 政策的인 育成에 따라 PVC제품의 수요 증대, 합성수지展示會 개최등으로 新제품의 대량 개발과 수출의 急增으로 수요가伸張하고 제품의 質的向上, 현저한 생산량의 증가를 이루었으며 수출의 경우 美國, 월남, 대만, 홍콩, 일본등 世界 여러국가에 합성수지Bag, 안경테등 각종 성형가공 제품들을 前年보다 약155%, 특히 前年에는 수출이 全無하였던 鮎시도구, 완구들의 수출은 새로운 수요(用途)의 개발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석유화학공업의 관련 산업으로써 계속 育成이 되고 本格的인 성장 단계에 접어든 합성수지공업은 규모의 영세성, 技術의 落後性, 전근대적인 경영, 원료(합성수지)의 높은 依存度(55.5%) (표12)라는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계속>

아이디어뱅크 개설 안내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록 關聯企業等에 連繫시키므로써 汎國民의인 發明風土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뱅크를 開設하였으나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對 象 :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
- ◎ 申請方法 :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 ◎ 接 受 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080 서울 江南區 驛三洞 814-5 발명진흥부 (TEL : 568-8263)
- ◎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 分期別로 審查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斡旋
 - 特許 · 實用新案 · 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查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 (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

KIPA通信 發刊案内

本會는 매월 10일 特許界 뉴스지 KIPA通信을 發刊하고 있습니다.

國內外 特許界 뉴스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 發刊하는 KIPA通信의 많은 애독을 바랍니다. 會員社에는 무료 提供되고 있습니다.

海外 特許情報 發刊案内

本會는 年 4回 季刊으로 海外 特許情報を 發刊하고 있습니다.

4·6倍版 200面 内외로 發刊되는 이 刊行物에는 海外 特許制度를 비롯하여 각종 特許情報가 실려있습니다.

會員社는 無料配布되고 있습니다.